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시책방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13102호, 1995. 8. 31)과 1995년 식품위생관리 시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13102호, 1995. 8. 31)

1. 개정취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14495호, '94. 12. 31)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식품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통사항

-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개정
-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개정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
-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

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신설 (제2조)

▷ 식품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관 변경 (제4조)

▷ 알로에제품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관을 국립보건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제품검사업무와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키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다.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으로 일원화 (제5조)

▷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품공전에서 각각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라.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 도입

(제11조 및 별표 6)

- ▷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도착일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정밀검사자료로 인정하는 등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제도를 개선함.

마. 자가품질검사의 강화

(제19조 및 별표 8)

-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제조·가공영업자가 자기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검사주기 등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장비의 미비 등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

(제20조 및 별표 9)

- ▷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식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하는 기계·기구류의 종류를 줄이는 등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

사.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완화

(제20조 및 별표 9)

- ▷ 종전에는 단란주점에서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던 것을 객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란주점의 업종형태에 부합되도록 그 시설기준을 정함.

아.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범위

확대(제21조의 2)

-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유통·보관상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업소를 영업장의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로 하던 것을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로 변경하여 그 신고대상범위를 확대함.

자. 영업허가 등의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제22조 및 제23조)

-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현재 영업허가 등의 신청시에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신원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도시계획관계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대상서류에서 제외하고 허가관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차. 품목제조허가대상식품 축소

(제24조 및 별표 10)

- ▷ 영업자의 신제품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제품생산시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대상식품을 종전의 154개 식품류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영양식품의 2개 식품류로 하고, 나머지 식품은 품목제조신고대상으로 조정함.

카. 영업자의 지위승계 간소화(제33조)

-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사실 확인만으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도록 함.

타. 위생교육의 축소 및 완화

(제37조의 2)

- ▷ 영업자·식품위생관리인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관리인과 신규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하여는 사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파. 영업자준수사항 축소

(제40조·제42조·별표 12 및
별표 13)

- ▷ 영업자준수사항 중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축소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

하. 행정처분기준 조정

(제53조 및 별표 15)

-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거. 기타

- ▷ 과대포장의 범위조정(제6조 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호, 1995.2.6)
- ▷ 출입·검사 등의 완화(제12조)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처분결과를 보고시 면제받을 수 있음.
- ▷ 수거량·검사의뢰의 권한위임(제13조)
 - 시장·군수·구청장도 수거, 검사의뢰할 수 있음.
-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결과기록서 보관 의무(제14조)
 -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의뢰기관의 시험결과기록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변경(제24조의 2)
 - 즉석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 변경(별표 11)
- ▷ 품목제조 중단신고 폐지(제25조)
 - 품목제조 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이를 재신고하지 않아도 됨.
- ▷ 품목제조 허가사항의 변경내용 간소화(제26조)



- 기품목제조허가(신고)자가 품목제조 허가변경시 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주원료로 간소화
- ▷ 영업신고서류 간소화(제27조)
 - 영업신고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원료수급계획서를 삭제, 건축물용도의 내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시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출
- ▷ 유사품목 판정기준 삭제(제31조의 2)
- ▷ 위생교육대상자 확대(제36조)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도 포함
- ▷ 식품위생관리인과 업종의 조정 및 완화(제38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도 업종간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시 업종간에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음.
- ▷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
- ▷ [별표 5] 및 [별표 13], [별표 15] 및 [별표 16]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내지〔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14호의 2서식〕을 별지〔별지 제14호의 3서식〕으로 하고,〔별지 제14호의 2서식〕을〔별지 제14호의 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별지 제18호서식〕 내지는〔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23호 서식〕 및〔별지 제25호서식〕 내지〔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28호서식〕중 수수료란의 “1,200원” 및 “600원”을 각각 “5천원”으로 한다.
- ▷〔별지 제31호서식〕 및〔별지 제33호 서식〕 내지〔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41호의 1서식〕을〔별지 제41호의 2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별지 제41호의 2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 ▷ 공포일로부터 시행(제1조)
 - 단서조항(1996. 1. 1)
제5조(표시기준 등), 별표 9 제1호(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13제2호다목(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식육판매영업자)는 유예기간을 둠.
-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 기 영업허가(신고)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유예기간을 둠(1998. 1. 1)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 기 영업허가(신고)자 중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

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유예기간을 둠(1996. 9. 1)

- ▷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 기 영업허가(신고)자는 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1997. 1. 1)
-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 기 영업허가(신고)자 중 그 허가(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또는 제27조(영업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증을 재교부받아야 함(1996. 7. 1).
- ▷ 건강보조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 영 제7조(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제21조의 2(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중 별표 9(업종별 시설기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1997. 7. 1)
- ▷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II. '95. 식품위생관리 시책방향

1. 전 망

-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크게 높아진 반면,
- 환경공해와 농약의 과다사용 등 식품의 위해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의 급증으로 식품위생행정의 제도상 보완 개선이 요구되고, 각종 가공식품의 개발과 유통구조의 다양화 등 식품위생환경의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 식품행정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사태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빈번한 문제제기가 예상됨.

2. 주요시책방향

<기본방향>

- 식품위생관리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진
- 업계의 자율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식품생산 기반조성
- 식품위생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감시활동 전개
-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확대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전국민적 위생감시분위기 조성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 및 제도개선 추진

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방법 개선

- (1) 수거검사실적, 식품정보, 계절적·지역적 특성, 수입식품 부적합현황 등을 집중분석하여 수거대상 다소비식품 품목을



재조정하고,

- (2)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전항목 검사방법을 탈피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중점검사 실시

나.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과학화 추진

- (1) 위생관리 우수업체지정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 위생관리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소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향상 유도
- (2)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계통지도점검 실시
 - 과거 위반사항 및 수거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계통지도 점검실시

다. 식품행정의 전산화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와 업무현황을 전산화하여 식품위생 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

라. 유통중인 식품관리 강화

- (1) 식품회수(Recall) 제도 도입
 - 식품생산 출하 후 판매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 등 위해식품 발생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리콜(Recall)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자사제품 관리 및 소비자보호의식 고취
- (2) 영세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시설 및 식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판매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인식제고와 시설개선유도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마. 수입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1) 식품 등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 통관 후 유통기한 변조 등 악덕수입

업자에 대하여는 차후 수입시에도 전수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

- (2) 수입식품 모니터링 실시 확대
 - 소비자단체, 자율지도원 등을 통한 수입식품의 모니터링 실시 확대
- (3) 위해요인이 많은 수입식품에 대한 중점관리
 - 냉장·냉동 수입식품, 유통기한이 짧은 수입식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수입 식품 등 위해요인이 많은 식품에 대한 집중감시 실시

바. 불법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1)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 및 신규 발생억제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종전환 및 신규허가 유도
 - 정비업소 및 허가취소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영업 방지 및 신규 발생 억제
- (2) 심야, 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 강화
 -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단속 실시
 -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업주의 건전영업 자율실천 유도

- (3) 관광특구지역내 식품접객영업질서 확립대책 강구
- (4) 일선기관별 지역책임제 운영 강화

사. 식품감시기능 보강

- (1) 식품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 유통식품 지도단속 등 식품위생단속 업무에 식품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기능 강화 및 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2) 자율지도원의 활용 강화
 -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단체(대한식품공업협회 등 9개 단체)에도 자율지도 시행유도
 - 자율지도원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로 자질 향상

아. 전국민 위생감시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1)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2)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여건개선 추진

- (1) 위해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부적정원료 사용, 미생물 기준위반, 첨가물 과다사용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2)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고발 기준 등 마련 시행

